

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

의안 번호	36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1998년 11월 6 일
발의자 : 이 치 옥 의장

□ 주 문

1. 지방지자치법 제121조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2. 심사기간은 1998년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.

□ 제안이유

1. 월활한 의사진행과 예산편성의 합법성·적합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건전재정운영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심사계획

1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건전재정 운영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

- 199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

3. 활동기간

1998년 11월 9일 ~ 1998년 11월 11일(3일간)

4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

- 이경진 의원, 강석주 의원, 이수현 의원, 신교선 의원, 김완규 의원,
우강호 의원, 김진석 의원

5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

일시	차수	내용	비고
‘98. 11. 9. (월)	제1차 예결특위	. 위원장·간사선임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‘98년 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소관별 심사	
‘98. 11. 10. (화)	제2차 예결특위	. ‘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소관별 심사(계 속)	
‘98. 11. 11. (수)	제3차 예결특위	. ‘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, 심사보고서채택	